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10. . (제 회)	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현미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10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 또는 시·도에서 버스 운전인력의 양성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할 수 있는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(법제50조제7항) 개정·공포(‘20.6.9)에 따라 동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원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버스 운전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버스운전인력양성 사업의 재정지원 대상과 범위(안 제21조의6조)

- 1)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의 개정 취지(버스운전인력양성), 국가가 버스운전인력 양성사업을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함)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버스 운전인력 양성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함

실제로 공단은 이미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군인 및 경찰 운전인력에 대한 버스운전자격취득 및 취업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해오고 있으며, 2017년부터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버스운전인력 양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

- 2) 아울러,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버스운전인력을 양성할 경우에도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

고자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3) 행정규제 : 총리실에 사전규제여부 검토 계획

대통령령 제 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6(버스운전인력양성 재정지원)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버스운수종사자의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
2. 시·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1조의6(버스운전인력양성 재</u> <u>정지원)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</u> <u>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고용노동</u> <u>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</u> <u>나에 해당하는 자가 버스운수종</u> <u>사자의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사</u> <u>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</u> <u>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</u> <u>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1.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</u> <u>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</u> <u>2. 시·도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824